



DAESAN HARBOUR PILOTS' ASSOCIATION

81, Daesan 1ro, Daesan-eup, Seosan-si, Chungcheongnam-do
(Seoul Korea 356-873)

Tel : 041) 664-5684, 681-8717 / Fax : 681-4968

대산도선 제 2021-상-015호

DATE : 2020. 11. 09

수신처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남도청, 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현대오일뱅크(주),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 SEETEC(주), 한화토탈(주), 태안화력본부, 당진화력본부, 보령화력본부, 신보령화력본부, (주)보령엘엔지터미널, 대동항업(주), 수정산업(주), 우진해운(주), 해양선박(주), 에이스해운(주), 동양해운(주), 신성마린(주), 월드쉬핑(주), 보령쉬핑(주), 동주해운, 백산해운, 한동해운

제목 : 풍랑주의보 발효 전 접안 선박의 이안 권고

1. 귀 사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 관련, 항만 내 선박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도선법 18조에 따라 대산항도선사회에서는 2013년 10월 15일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기상예보를 참고하시어, 작업중인 선박은 충남북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 발효 이전의 충분한 시간내에 하역작업을 중지하고 선박 이안을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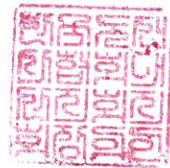
- 특히 풍랑주의보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효시간 직전에 위험물 운반선의 야간도선 규정을 초과하는 시간대에 긴급히 도선을 요청하는 사례는 당해 선박이나 항만, 도선사, 도선선, 예선 및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명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도선사회에서는 이러한 도선 신청은 받아 들이지 아니함을 깊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풍랑주의보 예비특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기상이 부두와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 판단 될 경우에는 별첨 “3. 풍랑주의보에 준하는 실제 기상 악화시의 도선안전기준” 절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풍랑주의보 발효 이후에는 항만에 접안중인 모든 선박의 이안 도선은 동주의보 해제 후 도선작업이 가능한 실제 기상 환경이 될 때까지 전면 유보됩니다.

별 첨 : 악천후 시 선박 이안에 관한 도선사회 권고.
(별첨은 협회 홈페이지 www.ds-pilot.co.kr에서 인쇄 가능합니다). 끝.

대산항도선사회
회장 정 준 권



악천후 시 선박 이안에 관한 도선사회 권고

악천후 시의 선박 부두 이안과 관련하여 수년간 반복하여 협조 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충실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선사회에서는 항만 내에서 사고예방을 위하여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권고하오며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1. 앞바다 풍랑주의보 발효 전

(1) 악천후가 예상될 시 기상의 영향이 본선에 작용하기 충분한 시간 전 즉, 먼바다 예비 특보 발효 전후하여 본선을 부두로부터 이안 할 것을 권고 합니다.

여기서 앞바다가 아닌 먼바다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외력의 영향으로부터 선박이 잘 보호되는 타 항구와 달리 방파제가 없는 대산, 태안항등은 외력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며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에 준비하자는 의도입니다.

(2)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만약 선주, 화주 등의 사정과 의지에 따라 이안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다면 충분한 예비 Mooring Line을 추가로 보강하고 필요, 가능, 안전하다면 예선을 준비시킬 것과 심야 특히 이른 새벽에는 본선은 물론 부두 측에서도 좀 더 경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실제 악천후 하에서 접안 선박의 출항을 위해 부두에 가면 특히 새벽 시간에 본선이 완전히 무방비, 위험한 상태로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며 현장 Line man에 따르면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반복된다고 합니다.

2. 앞바다 풍랑주의보 발효 후 이안 불가

(1) 앞바다 기상특보 발효 후 이안을 위한 도선 요청은 선박의 크기, 선종 (SPM, KNOC 접안 VLCC 포함)과 관계없이 모두 도선이 불가능하며, 도선사의 승선 자체가 불가합니다.

(2) 선박이나 화주의 결정에 따라 접안중인 선박이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된 경우라 하더라도, 도선사회에서는 기상악화시의 도선사, 도선선, 예선, 선박 및 항만에서의 인명사고 예방에 최우선 중점을 두어, 기상특보 해제 후 도선작업을 시행하오니 이 점에 특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때로는 기상특보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대산항 부근의 실제 상황이 특보와 현저히 다른 경우, 해당 도선사는 현장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도선 작업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 특보 발효 전 이안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에도 불구하고 선주 또는 화주의 필요, 비용 절감 또는 편익을 목적으로 안전하고 적절한 이안 기회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당사자께서는 결자해지(結者解之)원칙에 따라 당사자 책임으로 동 위험을 감수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순리입니다.
- 상기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사의 편익을 위해 인명사고의 위험을 감수하여도 된다는 견해를 가진 항만운영에 참여하는 회사가 있다면 도선사회에서는 불가피하게 공익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3. 풍랑주의보에 준하는 실제 기상 악화시의 도선안전기준

충남북부앞바다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아니하더라도 도선법에 따른 지방도선운영 위원회의 안전도선기준에 의하면, 순간최대풍속 12m/sec, 파고 2M 이상일 경우 도선을 거부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 당해 선박을 담당하는 도선사의 판단에 따라 도선 시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에서 이안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도선사회 상황실로 반드시 문서(또는 on line상)로 요청하시기 바라며 개별 도선사와 유선상의 요청은 금지 됩니다.

- Ⓐ 도선을 요청한 당사자 즉, 선주 또는 화주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보증서 (Letter Of Guarantee)를 첨부하고 동 보증서에는

- ⑦ 악천후 하에서 선박 이안을 요청하며,
- ⑧ 선박과 부두의 충돌, 도선선 항행 및 본선으로부터 도선사가 도선선으로 하선 중 발생한 모든 사고 등에 대한 손해보상,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 ⑨ 요청하는 회사 실제 책임자의 전화, 팩스 등 연락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선사 또는 화주의 대표이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장시간 걸리며 번거롭고 또 외국 선주여서 곤란하다고 통상 이야기하기도 하나 사고 발생 후 책임 전가의 여지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동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위 사항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선 인수는 유보될 것 입니다. 이 Letter Of Guarantee의 법적 효과 여부는 별개 문제이며 불가피하게 악천후 상태에서 도선 요청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첨부하여 도선사회 상황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⑩ 위 Letter Of Guarantee와 특별 도선요청 관련 서류 등을 도선사회 상황 실과 충분한 협의 이후 팩스 전송 및 도선신청을 하여 주시고, 원본은 반드시 전달 부탁합니다.
- ⑪ 위와 같은 서류상 절차가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만약 해당 도선사가 이안하기로 결정 하였다면 양호한 기상 상태에서의 통상적인 예인선 통합마력의 약 1.5배(본선 크기 등 고려하여 사전 협의 필요) 이상의 예선을 준비 바랍니다.
 - 예선이 부족하여 본선이 예선을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 그 결과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이안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니, 대리점 또는 예선사에서는 충분한 마력의 예선을 사전에 준비하기를 적극 권고 합니다.

4. 동시 이안을 대비한 충분한 예선의 사전 준비

기상 예비 특보 발효 후 악천후의 영향이 본선에 작용하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안하기 위해서는 대산항에서 동시에 많은 예선 사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예선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시시각각으로 악화되는 기상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 예선을 기다리다가 최악의 상황을 조우(遭遇)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예인선이 부족으로 인해 본선과 부두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 바랍니다.

만약 예선을 기다리는 동안 기상 악화가 현저히 진행되어 도선사가 이안을 거부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선 준비를 소홀히 한 결과에 대한 비난을 예선을 소유한 해당 대리점 또는 해당 예선사가 받게 될 것이니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한 소마력 여러 척보다는 대마력 예선으로 준비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특히 예선 준비에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면 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을 담당하는 도선사의 판단에 따라 도선이 거부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